

합의문 (제3차 수정초안)

신청인 김 기 창(金基昌)

서울 성북구 안암 5가 134-20 (keechang@fastmail.fm)

피신청인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우)135-758,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7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 변호사 정진영 등)

1. 피신청인 및 그 등록대행기관은 가입 신청자가 아래 각 항에 열거된 이용환경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① 인터넷 익스플로러 6.0 이상 (윈도우즈 98/2000/XP/Vista)
 - ② 파이어폭스 1.5 이상 (윈도우즈 98/2000/XP/Vista, 매킨토시 OS X, 리눅스 Ubuntu/Debian¹)
 - ③ 오페라 8.0 이상 (윈도우즈 98/2000/XP/Vista, 매킨토시 OS X, 리눅스 Ubuntu/Debian)
 - ④ 사파리 1.3 이상 (매킨토시 OS X)
2. 피신청인 및 그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가 제1조 각 항에 열거된 이용환경에서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폐지 및 효력회복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의 가입자(클라이언트) 설비가 준수하는 프로토콜과 API를 공표한다.
4. 제1조 내지 제3조의 조치는 이 합의문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한다.
5. 피신청인은 웹서버에 대한 제품이나 용역의 제공, 기술지원, 보증, 기타 어떠한 의

1 공인인증서 발급 시점의 current version을 뜻함.

무도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공표하는 API와 프로토콜의 정확성은 피신청인이 보증한다.

6. 제4조에 정한 기한 내에 제1조 내지 제3조의 조치가 행해지지 않거나, 피신청인이 공표한 프로토콜과 API가 부정확하여 서버측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없는 경우, 피신청인은 위약벌로서 금7억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date]

신청인

김기창

피신청인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제안 근거

제1조: 보편적 의무제공 의무(전자서명법 제7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시장점유율이 낮은 웹브라우저/운영체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절하는 것은 MS사의 소프트웨어 시장 독점 및 쏠림 현상을 조장하는 불공정 행위임.

제2조: 등록대행기관의 의무(금융결제원 인증업무준칙 2.1.2.1),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준칙 준수 의무(전자서명법 제6조 제4항)

금융결제원의 인증업무준칙 2.1.2.1(등록대행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등록대행기관은 법 제7조(인증역무의 제공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 폐지, 효력회복 등의 인증서 이용 관련 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자서명법 제6조 제4항은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제3조: 이용자의 선택권(정보통신부 장관의 2007.4.26.자 민원회신)

신청인이 2007.4.13. 제출한 법령질의에 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은 2007.4.26.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 하였음:

“현행 전자서명법령에 따르면, 은행(이용자)이 공인인증기관의 S/W를 이용할지, 전문보안 업체의 S/W를 이용할지는 은행(이용자)의 영업상의 자율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은행(이용자)은 물론, 여타의 “이용자”(전자서명법 제20조 참조)들도 공인인증기관의 S/W를 이용하기로 자율 선택할 수 있고, 이용자가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금결원 가입자 설비의 API 및 프로토콜이 공개되지 않으면, 어떤 이용자도 그것을 이용할 수 없음.

제4조: 이행 기한

피신청인은 2006.12. 에 이미 XPCOM 기반의 가입자 설비와 Webkit 기반의 가입자 설비 개발을 완료하였음. 전자는 파이어폭스, 모질라 등 gecko 계열의 웹브라우저에서 작동가능하고, 후자는 애플에서 가동하는 사파리 웹브라우저에서 작동가능함.

자바 애플릿에 기반한 가입자 설비에 대하여도, 피신청인은 2007.5.14.자 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도의 자바 애플릿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기술력이 없는 것이 아님”.

제5조: 재정적, 업무적 부담 없음

전자서명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피신청에게 재정적, 업무적 부담이 생길 이유가 없음. 피신청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웹서버의 서버측 소프트웨어의 설계, 설치, 운영, 유지, 보수, 관리 등 업무는 오로지 해당 서버의 책임과 부담임. 공인인증서 “파일” 및 개인 키 “파일” 자체의 사양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신청인이 웹서버들로부터 기술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

한편, 키 파일의 사양 자체를 바꾸는 결정은 피신청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 생기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수요는 피신청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임(시설, 장비규정 9.6.2참조). 끝.